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006

www.moumou.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 07. 2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 02. 26.

잉글리쉬무무

정 보 공 개 서

[(주)잉글리쉬무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 24 .

주식회사 잉글리쉬무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D동 1115호(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U1센터)

TEL : 031 - 699 - 9621

FAX : 02 - 431 - 1730

홈페이지: www.moumou.co.kr

담당부서/전화번호: 교육사업팀/ 031 - 699 - 962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8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8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9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7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4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6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8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53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잉글리쉬무무	잉글리쉬무무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D동 1115호(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 U1 센터)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5. 2. 4	2005. 2. 16	김 병 일	1544-9905	02-431-1730
	법인등록번호	110111-3166570	사업자등록번호	120-86-7797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김병일	잉글리쉬무무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D동 1115호(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 U1 센터)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병일	1544-9905	02-431-173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 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잉글리쉬무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잉글리쉬무무	
상 호	잉글리쉬무무 OO총판점 잉글리쉬무무 OO학습관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5-0016665 (2006.07.06) 서비스표 등록번호 45-0016666 (2006.07.06)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MOUMOU 무무 Grammar Focus axiom등 35종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044,790	2,700,145	-1,655,354	2,070,000	125,200	52,024
2022년	987,522	2,594,228	-1,606,706	1,772,595	103,161	48,648
2023년	884,404	2,419,665	-1,535,261	1,580,632	113,433	71,444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 1)항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병일	사내이사	2019.6.~현재	(주)잉글리쉬무무 사내이사	관리전반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1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총37건(내역: 상표·서비스표 5건, 상표권32건)이며, 그 중 중요한 지식재산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서비스표)	가맹점 운영	2005.02.24 출원 2006.07.06 등록	출원 제2005-0001079 등록 제45-00166650000	(주) 잉글리쉬무무	2006.07.06.~ 2026.07.06.
 (상표·서비스표)	가맹점 운영	2005.02.24 출원 2006.07.06 등록	출원 제2005-0001080 등록 제45-0016665	(주) 잉글리쉬무무	2006.07.06.~ 2026.07.06.
무 무 (상표)	가맹점 운영	2005.02.24 출원 2007.03.05 등록	출원 제2005-0007914 등록 제40-0700716	(주) 잉글리쉬무무	2007.03.05.~ 2027.03.05.
MOU MOU (상표)	가맹점 운영	2005.02.24 출원 2007.03.05 등록	출원 제2005-0007913 등록 제40-0700715	(주) 잉글리쉬무무	2007.03.05.~ 2027.03.05.
 (상표·서비스표)	가맹점 운영	2007.06.19 출원 2008.07.24 등록	출원 제2005-0002433 등록 제45-0023990	(주) 잉글리쉬무무	2008.07.24.~ 2028.07.24.
디지털 영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영어 학습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기	학습특허	2015.10.20 출원 2016.03.29 등록	출원 제10-2015-0145903 특허 제10-1608709	이철순, 김병화, 김병일, 김혜원	2015.10.20~ 2035.10.20
영어 감각훈련에 기반한 영어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단말기	학습특허	2019.06.13 출원 2019.12.30 등록	출원 제10-2019-0069813 특허 제10-2062552	이철순, 김병화, 김병일, 김혜원	2019.06.13~ 2039.06.13
 (상표)	상표등록	2019.03.27 출원 2020.01.20 등록	출원 제40-2019-0046871 특허 제40-1565970	(주) 잉글리쉬무무	2019.03.27~ 2029.03.27

기존 상표권자 김성수님에서 상속으로 인한 포괄 승계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잉글리쉬무무]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5년 05월 02일

(직영점 없음)

2. 잉글리쉬무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무무	무무	이종명	2005.5.2.~2006.5.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9-2 세림테크빌딩 7층
주식회사 무무	무무	김성수	2006.5.18.~2007.3.20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빌딩 2층
주식회사 무무	잉글리쉬 무무	허강원	2007.3.20~2009.12.20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빌딩 2층
주식회사 잉글리쉬무무	잉글리쉬 무무	허강원	2009.12.21~2011.3.30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63, 5.6층(천호동, 대세빌딩)
주식회사 잉글리쉬무무	잉글리쉬 무무	허강원	2011.03.30~2014.3.30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63, 5.6층(천호동, 대세빌딩)
주식회사 잉글리쉬무무	잉글리쉬 무무	허강원	2014.03.30~2019.5.31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63, 6층(천호동, 상정빌딩)
주식회사 잉글리쉬무무	잉글리쉬 무무	김병일	2019.6.01~2019.11.15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63, 6층(천호동, 상정빌딩)
주식회사 잉글리쉬무무	잉글리쉬 무무	김병일	2019.11.16~현재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D 동 1115호(풍산동, 하남테크노밸 리U1센터)

3. [주식회사 잉글리쉬무무] 업종

영업표지	업종	
잉글리쉬무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외국어)	영어학습 콘텐츠(초등영어)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잉글리쉬무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31	231	0	207	207	0	191	191	0
서울	22	22	0	21	21	0	18	18	0
부산	21	21	0	18	18	0	14	14	0
대구	1	1	0	1	1	0	1	1	0
인천	9	9	0	9	9	0	8	8	0
광주	27	27	0	26	26	0	24	24	0
대전	2	2	0	2	2	0	2	2	0
세종	0	0	0	0	0	0	0	0	0
울산	11	11	0	7	7	0	7	7	0
경기	46	46	0	46	46	0	43	43	0
강원	4	4	0	4	4	0	4	4	0
충북	7	7	0	6	6	0	6	6	0
충남	8	8	0	5	5	0	5	5	0
전북	17	17	0	17	17	0	17	17	0
전남	20	20	0	14	14	0	14	14	0
경북	4	4	0	2	2	0	1	1	0
경남	27	27	0	24	24	0	25	25	0
제주	5	5	0	5	5	0	2	2	0

5. 바로 전 3년간 잉글리쉬무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40	9	6	12	10	231
2022	231	2	17	9	3	207
2023	207	3	9	10	8	191
합계	-	14	32	31	21	-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 해당없음: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잉글리쉬무무 가맹사업자의 매출은 매월 가입되어 당사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로 이루어집니다. 수강료는 프랜차이즈이지만 교육서비스업, 즉 학원사업은 단위 교육청별로 고지해 놓은 수강료 상한액 범위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수강료가 단일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회원의 수강료는 평균적으로 약 170,000원으로 추정합니다.

(단위 : 천원-소수점 이하 버림, 면세사업으로 부가세 해당 없음)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가맹점 연간평균매 출액	면적 3.3㎡당 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91	33,966	891	215,730	5,695	340	9	164
강원	4	-해당없음-						5개미만
경기	43	29,119	769	205,700	5,430	340	9	38
경남	25	30,422	803	108,970	2,877	680	18	24
경북	1	-해당없음-						5개미만
광주	24	31,464	831	108,290	2,859	680	18	22
대구	1	-해당없음-						5개미만
대전	2	-해당없음-						5개미만
세종	0	-해당없음-						5개미만
부산	14	40,475	1,069	133,790	3,532	3,910	103	10
서울	18	44,051	1,163	215,730	5,695	340	9	15
울산	7	62,779	1,657	178,160	4,703	6,290	166	7
인천	8	57,193	1,510	169,320	4,470	10,370	274	7
전남	14	36,489	963	128,350	3,388	2,040	54	13
전북	17	40,481	1,069	65,620	1,732	3,740	99	17
제주	2	-해당없음-						
충남	5	11,900	314	22,950	606	680	18	5
충북	6	13,226	349	17,170	1453	1,020	27	6

*첨부파일 참조

위 내용은 당사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전국 시도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동안의 총 매출과 평균 매출을 추정/산정한 것입니다.

* 1(일) 가맹점사업자 연평균 매출액 : 33,966,000원

1. 가맹점사업자 매출

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해서는 회원수(첨부파일 참조)로 추정만 할 수 있음

1)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추정/산출의 근거는 기타 업종의 매출을 추정하는 사업장 면적(㎡)과는 달리 매월 수강료를 납부하는 회원수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표에는 보습학원 기준 동일 면적(125㎡)당 매출로 산정하여 표시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지역에서 가맹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최고매출을 상한액으로 최저매출을 하한액으로 표기함

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은 콘텐츠(영어)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나마 추정 가능하다. 회원이 1개월에 콘텐츠 2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0.001% 안된다. 지역별로 콘텐츠 1개에 대한 가격이 상이함(140,000원~210,000원)
 마. 그 이유는 교육청(지역)별로 수강료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
 바. 그래서 1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평균적으로 170,000원으로 함

2. 당사의 관리시스템상에 나타나 있는 연간 매출 회원수를 바탕으로 함

- * 매출액은, 당사의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가맹점사업자가 입력한 월별 회원 수를 기초로 회원 1인당 월 학원비(평균적으로 170,000원)를 곱하여 추산되었습니다.
 - 매출액은 1인당 월 부교재 학원비는 제외하고 주교재 매출액만 산출한 것입니다.

8. 잉글리쉬무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잉글리쉬무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191	4,788

9. 가맹지역본부(지역사, 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29]곳의 [총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2. 31. 기준)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1. 강릉시,속초시	무무영어학원/강원 강릉, 속초 총판	강원 속초시 교동 620-28 현대프라자 3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홍은희	033-636-0508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2. 경기 광명시	잉글리쉬무무광명4,7동 학원/경기 광명시 총판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32번지 중앙하이츠아파트 상가 A동 2층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온영란	02-825-9905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3. 경기 시흥시	잉글리쉬무무거모학습관/경기 시흥시 총판	경기 시흥시 거모동 동운디오빌 2층 208호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윤경	031-508-0676	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4. 경기 평택시	소사별평택잉글리쉬무무	경기 평택시 비전동 소사별택지지구 4026-1 골든		

	학원/경기 평택시 총판	프라자2 2층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성은주	031-618-0502	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5. 경기 양평군,가평군	잉글리쉬무무/경기 양평, 가평 총판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28-71 태창빌딩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박국진	031-773-9906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6. 서울시 양천구	잉글리쉬무무/서울양천구 총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66번지 동아빌딩 2층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규민	031-3663-0030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7. 경남 창원시 마산구	잉글리쉬무무교방학원/경 남 창원시 마산구 총판	경남 마산시 교방동 510번지 무학산 벽산블루밍단 지내상가1단지 2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엄우태	055-245-9905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잉글리쉬무무교방학원/경 남 창원시 의창구 총판	경남 마산시 교방동 510번지 무학산 벽산블루밍단 지내상가1단지 2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엄우태	055-245-9905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9. 밀양시,창녕군,청도군	잉글리쉬무무어학원/경남 밀양,창녕,청도 총판	경남 밀양시 삼문동 219-26번지 2층 잉글리쉬무 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풍성	055-356-6655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10. 경남 양산시	잉글리쉬무무양산총판/경 남 양산시 총판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607-8번지 피닉스빌딩 501,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혜경	055-385-5610	1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11. 울산 중구, 울주군	잉글리쉬무무울주군중구 총판/울산 중구,울주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47-18번지 잉글리쉬 무무		

	총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정강주	052-264-9906		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12. 광주 광산구을	잉글리쉬무무광주 광산 구를 총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643-2번지 3층 302호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박미자	061-334-9905		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13. 광주시 남구.동구	(주)엘리트아카데미/광주 남구,동구 총판	광주 남구 봉선동490-5번지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경애	062-673-0005		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14. 광주시 북구 (중흥,중암,임,신안,용봉, 운암,동림,건국,담양,양 산,연제)동	잉글리쉬무무 운암제1학 습관보습학원/광주 북구 갑 총판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286-10번지 304호 잉글 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후동	062-571-8205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15. 광주 광산구 (첨단,신창,신가,운남)	English MouMou 학원/ 광주광산구갑총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689 수완새한포유아파 트 상가 2층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한현주	062-955-8605		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16. 부산 금정 총판	잉글리쉬무무부산경남지 역사/부산 금정구 총판	부산 금정구 구서동 251-25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강은나	051-583-9909		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17. 광주 서구 총판	잉글리쉬무무광주 서구 총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643-2번지 3층 302호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박미자	051-361-9951		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18. 부산시 사상구	잉글리쉬무무학장제1학 원/부산 사상구 총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97-17 4층 잉글리쉬 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강정화	051-311-9905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19.경기 동탄 총판	렛츠/경기 동탄 총판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34, 202동 4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진아	031-238-6123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20.부산시 동래구	주식회사 리안에듀/부산 동래구 총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242번지 안락뜨란채 2단지아파트 상가 203호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변지원	051-524-9905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21.서울시 강서구	잉글리쉬무무내발산학원/ 서울 강서구 총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77-4번지 창우빌딩 4층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규민	02-3663-0030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22.인천시 부평구	잉글리쉬무무경기1/인천 부평구 총판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9-2 하이존프라자 8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경애	032-524-9905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23.목포시.무안군.함평군. 영광군	대불잉글리쉬무무/전남 목포시 총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222-2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임현지	061-463-9905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24.해남군,완도군,진도군, 장흥군,영암군보성군,강 진군	잉글리쉬무무대불학습관/ 전남 해남군 총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222-25번지 잉글리쉬 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임현지	061-463-9905	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25.군산시	잉글리쉬무무(군산총판)/ 전북 군산시 총판	전북 군산시 나운동 778-10 2층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정화	063-911-9905	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26.전북 남원시	잉글리쉬무무/전북 남원 시 총판	전북 남원시 죽향동259번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윤혜경	063-632-9905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27.인천 계양구,남동구	잉글리쉬무무경기1/인천 남동,계양구 총판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9-2 하이존프라자 801호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경애	032-524-9905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28.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총판/경남 김해시 총판	경남 양산시 남부동 607-8번지 피닉스빌딩 501,2 호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혜경	055-385-5610	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29.충북 음성,진천,보은, 영동	잉글리쉬무무/충북음성, 진천,괴산,증평,보은,영동 총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43-3 잉글리쉬무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진희	043-883-0339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O	O	O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총판 관리를 위하여 [4]곳의 [지역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2. 31. 기준)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인천광역시, 부천시,시흥시, 광명시,안산시,김포시, 화성시	잉글리쉬무무경기지역사/인 천부평구 총판/경기1지역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9-2 하이존 프라자 8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경애	032-524-9905	26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광주광역시,제주시, 전라남도,전라북도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	○	○
	호남지역/광주 남구,동구 총 관/호남지역사	광주 남구 봉선동 490-5번지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박홍석	062-673-0005	54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	○	○
	잉글리쉬무무부산경남 지역사/부산경남 지역사	부산 금정구 구서동 251-25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강은나	051-583-9909	3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	○	○

강원강릉시, 속초시, 원주 시, 고양시, 파주시, 서울구 로서구, 강서구, 양천구	잉글리쉬무무 서울3지역사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77-4번지 창우빌딩 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규민	02-3663-0030	1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1. 1~2024.12.31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잉글리쉬무무]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0.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 계			7,126		(비공개)	
광 고	소 계		7,126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 촉	소 계		0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판촉에서 2023년 별도의 이벤트는 없고, 가맹점이 신규 개원을 하였거나 기존 가맹점들이 자체적으로 판촉물 사용할 시 가맹본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SGI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전국 우체국 (서울 중앙 우체국)	영업과	해당 지역 우체국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1)	해당 지역 우체국 문의 (02-6450-1220)
SGI 서울보증보험 삼성지점	대표 한경숙	삼성지점 대리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02-564-230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공개서의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합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에 나와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 또는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금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해당 없음	
보험계약자	해당 없음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해당 없음	
보험기간	해당 없음	
보험금액	해당 없음	
보장범위	해당 없음	
지급조건	해당 없음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개월 소요

[※ 보험증권 본문의 사본이 있는 경우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000]천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가구류 구입비용, 전기충압비용, 냉난방기기설치비용, 간판설치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혹은 계약이행보증보험	확정 금액
기타 인테리어, 설비/정착물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 업체 가맹점사업자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3,000]		
영업표지 사용대가	92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 참조). 1. 당사가 정보공개서나 가맹점계약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을 어겨 귀하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최초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귀하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최초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귀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최초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되며, 잔여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반환합니다.
Know-how 최초교육 제공대가	8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위 내용과 같습니다.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 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만약 귀하가 가맹 계약 체결 이후 점포의 개설 이전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는 최초 가맹금 중 500,000원을 위약금으로 제한 후 위 조건들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2) 계약이행 보증금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 보증금	100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상품대금 등 모든 금전적 채무액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발생	계약종료 시 상호, 서비스표 등 당사와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비는 [6,000] 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6,000]
최초 가맹금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혹은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6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면적 115.7㎡	면적 33㎡당	지급	반환	비고
----	------	-----------	---------	----	----	----

		기준 금액	금액	기한	조건	
총계		[23,800~25,600]	680~731			
필수설비 (책상, 의자 등)	개별 시공업체	4,000~4,800	114~137	계약 업체와 별도 계약에 의함	계약 업체와 별도 계약에 의함	40석 기준 (1석당 약 12만원)
태블릿PC (또는 기타 학습매체)	개별업체	1대당 21만9천 원 내외 (태블릿 거치대포함)		상동	상동	2016년 5월1일 매체변경 (태블릿 전자교재 및 음원)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외 29개 업체 [31]면 참조	115.7㎡ 기준 16,800	480	상동	상동	추가비용은 지정업체와 합의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잉글리쉬 무무	3,000~4,000		물품 공급 2일 전	상품 미공급 시	교재

[상기의 인테리어, 필요설비/정착물에는 가구류, 간판, 전기승압장치, 냉난방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업체의 정보는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 (선정지원: 해당 총판점 또는 지역사)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가맹 희망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점포선정의 문의처 : 해당 총판점 또는 지역사, 연락처: ‘Ⅱ. 가맹본부의 [잉글리쉬무무] 가맹사업 현황 > 6. 가맹지역본부(지역사, 총판)’의 일반 정보 참조]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ㄱ. 당사의 제반 규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자 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ㄷ. 잉글리쉬무무의 영어 교육 내용을 회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질과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자 ㄹ.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내역 (별첨2)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개점행사비용(최초 영어교육설명회)

개점행사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	비고
홍보전단(삽지 등)	800,000	전단지 5연 사용 시
플랭카드	100,000	5개 설치시(설치비용 별도)
선물(관촉물), 간식	400,000	40명 참가기준
점심식대	200,000	25명 기준
총 합계		1,500,000
※ 행사 장소 및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9)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사전 통지	교육 실시 3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사전 통지	다음 분기 첫달 의 말일까지 그 명세서를 첨부 하여 통지하고, '을'은 그 통지 를 받은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	광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광고 실시 후 반환 안됨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 또는 '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병'의 경영 상태의 변 화, 경제 상황의 변화, 광고 비용의 과다 등 변동 요인 이 있을 경우, '갑'은 '을'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당사의 교육훈련비는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사전통지를 하
고 분담금이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비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기준: 2023년)	내용 ^②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③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④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
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
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
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 등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상황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무	해당 없음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무	해당 없음
기타 영업 및 경영 현황 점검	영업현황 또는 경영상태 점검 (당사 각종 방침, 각종 법령 준수 여부 점검 포함)	수시	문의: 해당 가맹지역본부

② 운영시스템(MMS) 사용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MMS사용	게시판 사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게시물 내용의 관계법령 위반 또는 본 계약 제규정 위반 여부)	수시	문의: 해당 가맹지역본부

4) 경업금지 기간

귀하는 계약기간 중에는 귀하 또는 제3자 명의로 당사와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에 나와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할 때 다음의 제한이 있습니다.

갱신 조건
<가맹계약서> 제33조 (계약의 갱신) ⑤ '을'은 계약갱신 시 다음 각 호를 계약갱신일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을'의 매장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시스템이나 변경된 디자인이나 영업표지, 인테리어가 있을 경우, 변경된 디자인이나 영업표지, 인테리어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나 교체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갱신 시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은 새로운 가맹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 대한 상품대금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한다.

2) 가맹본부 사정으로 인한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귀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고 귀하의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기간을 인정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계약이행보증금은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기간이 아닌 완전한 기간을 부여할 경우, 양수인은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잉글리쉬무무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42,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맹점계약서 제35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 ① 본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즉시 '병'의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귀한다.
- ② '갑'이 제7조[최초 가맹금] 제4항, 제35조[가맹금의 반환] 등에 의하여 최초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 의 상호 등의 사용중단·원상복구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갑'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 '갑'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이 '갑' 또는 '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을' 의 부담으로 한다.

5)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영업표지변경시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	비고
간판	2,500,000	천+크레인+안정기교체 포함
이미지월로고	120,000	규격(0.8m)
내·외부선풍	180,000	
시트철거비용	150,000	82㎡기준
총 합계		2,950,000
※ 가맹점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6) 가맹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 계약서 제46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 ① '갑', '을', '병' 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 계약의 다른 사항이 없는 한 **그 손해의 정도와 위반의 성격, 상호간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갑', '을', '병' 이 서로 합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본 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갑', '을', '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일금오백만원(₩5,000,000)을 위약별로 지급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 없음 : 귀하가 잉글리쉬무무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잉글리쉬무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잉글리쉬무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개정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개정으로, 학원에서 회원에게 받을 수 있는 ‘기타경비’에서 교재비가 삭제됨에 따라, 학원은 회원에게 교재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잉글리쉬무무는 개정 학원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2012년 3월 1일부터 가맹본부가 직접 회원에게 교재를 판매합니다.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조 제3호(권리의 부여)>

‘갑’은 ‘병’의 가맹지역본부로서 ‘병’이 개발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을’에게 부여한다.

3. ‘병’으로부터 ‘을’의 회원이 지속적으로 상품의 공급을 받을 권리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잉글리쉬무무 OAEP 프로그램	- 당사가 제시하고 교육한 표준 교육방침을 준수해야 함 - 과외 등의 방법 금지 - 교육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시 당사 또는 총판점과 사전협의 필요	적법절차를 거친 후 가맹계약의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취급상품 제한내용 및 조건]

<가맹계약서 제24조 (상품 및 용역의 소비자 가격)>

- ① '을'이 공급하는 상품 및 교육 용역의 소비자 가격에 관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을'은 '갑'이 제시하는 소비자 권장가격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 ② '갑'이 제시하는 소비자 권장가격이 물가변동 또는 '갑' 또는 '을'의 영업 정책 등으로 인하여 변동할 경우, '갑'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하고 시행 1개월 전에 이를 '을'에게 서면으로 또는 MMS를 통하여 통지한다.
- ③ '을'이 제1항의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2주 전에 서면에 의하여 변경의사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이 통보한 소비자 가격이 '을'의 가맹점과 인접한 3개 가맹점사업자들의 평균 소비자 가격 대비 30% 이상 많거나 적은 경우, 당해 소비자 가격 설정에 대하여 '을'에게 서면상의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

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학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원에서는 회원에게 교재(서적)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가맹본부가 회원에게 직접 교재 및 전자출판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가맹점 소속 학생 들 외의 일반인	서적외 전품목	가맹점 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요청과 그에 따른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는, 공급 받은 상품을 타인에 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적법절차를 거친 후 가맹계약의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잉글리쉬무무 가맹점 교습료	교육청 단위 규정에 따라 총판이나 지역단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습료 지정	지역단위 회의를 통해 통보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사는,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해당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소비자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2주 전에 서면에 의하여 변경 의사를 당사에 통보하고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통보한 소비자 가격이 해당 가맹점과 인접한 3개 가맹점사업자들의 평균 소비자 가격 대비 30% 이상 많거나 적은 경우, 당해 소비자 가격 설정에 대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상의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영어 교육서비스	주식회사 잉글리쉬무무	해당없음

<가맹계약서 제5조 (영업 지역)>

② ‘을’ 은 ‘갑’ 의 허락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⑤ ‘갑’ 은 본 계약기간 중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을’ 의 가맹점의 영업 지역 안에서 ‘을’ 과 동일한 업종의 ‘갑’ 또는 ‘갑’ 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 ‘병’ 또는 ‘병’ 의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2014.1.2.제31조제4항에서 이동>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라 계약 체결 바로 전 사업연도의 통계청 자료 기준 인구수 2,000 ~ 4,000 세대 당 1개 학습관의 영업지역으로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가맹계약서 제5조 (영업 지역)>

⑤ '갑'은 '을'의 동의를 통하여 제1항의 영업 지역을 해당 지역의 인구수의 변동 (본 계약 체결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 통계청 자료상의, 해당 지역 내 인구수에 2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의 갱신·연장 시에 조정할 수 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서면상 합의에 의한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서면상 합의서 작성으로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잉글리쉬무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잉글리쉬무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첨부된 영업구역의 지도 표시란에 영업구역이 명확하게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첨부된 영업구역의 지도 표시란에 영업구역이 명확하게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

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맹계약이 갱신될 경우, 그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4조1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4조1항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4조1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44조1항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44조1항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4조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0]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가맹계약서 제44조 (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4조[거래자의 기본 요건]의 각 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을'이 제20조[최초 가맹금]와 제22조[계약이행보증금]에 규정된 가맹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3. '을'이 본 계약 체결시 '갑'에게 제공한 첨부 서류의 내용이 고의로 위·변조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 4. '을'이 제41조[영업의 양도] 제1항, 제2항, 제9항 등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차,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 5. '을'의 '갑'에 대한 채무액 및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제22조[계약이행보증금]에서 규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6. '을'이 제31조[MMS의 사용]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7. '을'이 제43조[계약의 갱신]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8. '갑'이 약정한 상품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9. '갑'이 제36조[상품의 하자과 검사]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한 '을'의 요청 또는 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10. '을'이 제13조['을'의 의무]에 규정된 각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상품공급중단 규정 삭제(2011.12.5.) 제30조 ('을'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갑' 또는 '병'의 영업 관련 또는 교육 노하우 관련 비밀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물론이고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을'은 자신의 직원에 의한 본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갑'이 제공하는 상품, 교육과 세미나 자료, 각종 매뉴얼, 편람의 내용 등을 인쇄·복사·무단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불법유통 할 수 없으며, 본 가맹사업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나 다른 가맹점에게 유통할 수 없다.

- ③ '을'은 계약의 존속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 또는 '병'의 영업과 동종의营업을 해서는 안된다. 본 조항에서 '갑' 또는 '병'의 영업과 동종이라 함은, 영어 교육과 관련된 교재 및 전자출판물의 출판·대여·판매, 교습 행위, 또는 학원의 운영 등을 포함한다.
- ④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을 개점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가맹점을 개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을 개점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을'은 제5조 제3항 또는 관계법령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지장이 되는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본 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제기된 이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
 2. 기타 '갑'의 조정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
- ⑥ '을'은 가맹점의 경영 현황에 관한 회계장부 또는 '을'의 보유 회원 관련 정보 등 '병'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유지하고 '갑'의 요청시 7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⑦ '을'은 '을'의 업무현황과 제5항의 자료 확인 및 기록을 위하여 '갑' 또는 '병'의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이 '을'의 사업장을 출입하도록 허용한다.
- ⑧ 삭제<2011.12.01.>
- ⑨ '을'은 '갑' 또는 '병'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⑩ '을'은 '갑' 또는 '병'이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⑪ '을'은 '을'이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에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⑫ '을'은 제10조[교육 및 훈련]에 의거하여 '갑' 또는 '병'이 제공하는 각종 교육에 성실하게 참가·수료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 '을'은 교육 실시 7일 전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을'이 부득이한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갑' 또는 '병'이 제공하는 각종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 '갑'은 정보공개서 또는 교육매뉴얼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된 방법에 의하여 각종 영업 지원 등에 있어서 차등화하는 방식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⑬ '을'은 '갑' 또는 '병'이 제시한 교육 지침 및 회원관리방법에 따른 교육 용역 제공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⑭ '을'은 기타 '병'의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⑮ '을'은 안전적이고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병'의 영업 방침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차량 수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다.
- ⑯ '을'은 '을'의 매출 및 회원 관련 정보를 '갑' 또는 '병'에게 허위로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⑰ '을'은 가맹계약서 제23조의 2(교재의 주문 및 결제에 대한 조력)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계약의 갱신)>

제33조 (계약의 갱신)

- ① '갑'은 '을'이 본 계약 유효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

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을'이 제7조[최초 가맹금], 제8조[계약이행보증금], 제23조[상품대금의 지급]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 또는 '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

-아래-

1. 본 계약에 의거한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갑' 또는 '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을'은 계약갱신 시 다음 각 호를 계약갱신일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을'의 매장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시스템이나 변경된 디자인이나 영업표지, 인테리어가 있을 경우, 변경된 디자인이나 영업표지, 인테리어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나 교체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갱신 시 '갑'과 '을'은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 대한 상품대금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즉시해지사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즉시해지사유와 동일합니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34조 (계약의 해지)>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갑’과 ‘을’은 상호간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3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	----

1. 양수인은 제3조의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기타 양수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맹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해당 총판점 대표 (또는 지역사 대표)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당사 승인 → 1개월 내 승인 여부 서면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양도는 잔여기일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당사는 양수인으로부터 별도의 최초 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	--	--

[가맹점 사업자가 요청하고 양수인과 당사가 동의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 : 가맹지역본부 ‘을’ :가맹점사업자 ‘병’ : 가맹본부

당사의 상속 승인 거절 조건	상속 절차	비고
1. '을'의 상속인이 다음의 제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학원 사업을 운영하고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자등록 등 관련 법령상에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기타 법률상 상행위와 당사의 영업정책이 요구하는 신고나 등록업무를 필하여야 합니다. 2. 기타 '을'의 상속인이 '을'을 대신하여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을'의 상속인은 '갑'에게 상속 개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 '갑'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서면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상속인에 대하여는 최초 가맹금을 면제한다.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 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해당 가맹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비고
영어 교육과 관련된 교재의 출판·대여·판매, 교습 행위, 또는 학원의 운영	

경업금지
<가맹계약서 제30조 ('을'의 의무)> ③ '을'은 계약의 존속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 또는 '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본 조항에서 '갑' 또는 '병'의 영업과 동종이라 함은, 영어 교육과 관련된 교재의 출판·대여·판매, 교습 행위, 또는 학원의 운영 등을 포함한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일수	비고
주5일 이상 월 20일 이상 영업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 못함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영업제한
<가맹계약서 제28조 (영업시간)> ① '을'은 주 5일 이상 월 20일 이상 영업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단, 공휴일로 인한 휴업이나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휴업 등으로 인하여 본 조항의 기준이 미달되는 것은 본 조항의 위반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 '을'이 휴업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갑'에게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로 인한 휴업은 제외한다. '갑'은, '을'이 통지한 사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비상식적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들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회원 50~70명당 교사 1명	직접 근무하거나 대리인을 사용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비고
1. 청결 상태 2. 회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회계처리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상의 제반 준수 사항 5. 각종 설비 관리 6. 해당 가맹계약상에 당사가 제시하는 인테리어 시안에 관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당사가 제시하는 운영실무매뉴얼 등에 의거한 당사의 영업방침에 관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에 관한 사항 8. 당사가 제시하는 교육매뉴얼 등에 의거한 당사의 교육방침에 관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기타 해당 가맹계약 상의 제반 의무에 관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분담금 (전국광고)	사전통지 [통상:100 %]	사전통지[통상: (전체가맹점) 0 %]	별도 절차 없음	전국광고 (동영상 IMTV, 5대 일간지 등) ※부득이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분담을 요청
광고분담금 (지역광고)	사전통지 [통상:100 %]	사전통지[통상: (전체가맹점) 0 %]	별도 절차 없음	해당 지역(해당 지역의 지사가 본사부담을 대체할 수 있다) ※부득이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분담을 요청
판촉행사	사전통지/ 행사에 따라 달라짐 [통상: 팸플렛 등의 디자인 시안 제작 비용은 ‘갑’이,		별도 절차 없음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경품 제공, 이벤트

	판촉물 제작 소요비용은 '을'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광고분담기준

<가맹계약서 제16조 (광 고)>

- ② 광고의 횟수·시기·매체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사업 운영매뉴얼에서 정하는 바 또는 '갑'과 '을'의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단, '갑'은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전국규모 및 가맹지역본부 관할 지역 단위의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 또는 '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병'의 경영 상태의 변화, 경제 상황의 변화, 광고비용의 과다 등 변동 요인이 있을 경우, '갑'은 '을'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전항에 따라 '갑'이 광고 비용을 '을'에게 청구하는 경우, '갑'은 매 분기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을'이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다음 분기 첫달의 말일까지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사전에 당사와 합의하여야 하며,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어서 당사의 표준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학습방법, 영업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가맹계약서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서 제46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 ① '갑', '을', '병' 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 계약의 다른 사항이 없는 한 그 손해의 정도와 위반의 성격, 상호간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갑', '을', '병' 이 서로 합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본 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갑', '을', '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일금오백만원(₩5,000,000)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 ③ 전 ①, ②항과 별도로 '갑' 과 '병' 의 임직원이 일명 '갑질' 혹은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여 가맹사업 취지와 이미지가 훼손되어 가맹점사업자인 '을' 이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손해의 정도와 위반의 성격, 상호간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갑'과 '병' 은 성실한 자세로 합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갑' 과 '병'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합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51~71일]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 기간	소요 비용
합계		51~71일	약 3,000
1. 가맹사업 상담	-상담	1일	
2. 상권분석 상담	-의사 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상담	1일~3일	
3.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및 검토 기간 부여 -정보공개서 제공과 함께 인근 가맹점 10곳의 현황문서 제공	최소 14일 전	
4.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점 계약서 제공 및 검토 기간 부여	최소 14일 전	
5. 가맹 계약 체결	-가맹 계약 (각 지역의 총판사장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계약 가맹사업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에 그 결과를 보고함)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계약 가능 (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6. 가맹금 예치	-가맹비 학습관 300만원 / 교습소 200만원 / 공부방 100만원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학습관 300만원 교습소 200만원

	-계약이행보증보험 <2017.01.01. 이후 신규 계약체결 가맹점은 보증보험증권 대체가능> -시설기준은 공부방 이상 -가맹사업자는 가맹금의 예치기관으로 직접 입금하여야 함. 단 가맹본부가 가맹금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며, 이때에는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증명서를 제공함		공부방 100만원
6-1. 가맹금의 예치 절차와 계약 승인	①총판사장이 가맹금의 예치기관 안내 및 가맹금의 예치신청서를 제공함	계약 체결 직후	
	②가맹사업자는 총판사장이 안내한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신청서와 함께 가맹금 3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함	금융기관 : 우체국 또는 서울보증보험 계약 체결 후 3일내	
	③가맹사업자는 가맹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맹금 예치증서를 수령하여 보관함	가맹금 예치 직후	
	④가맹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은 가맹본부(본사)에 가맹금의 예치사실을 통지함	가맹금 예치일로부터 7일내	
	⑤본사는 가맹점 계약서와 가맹금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가맹점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승인함	가맹금 예치사실을 통지받은 직후	
6-2. 가맹본부가 가맹금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의 절차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대체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금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증명서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함. -총판사장은 가맹계약과 가맹금 수령사실을 본사에 보고하며, 본사는 가맹계약을 승인함	계약 체결 후 3일내	
7. 점포 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3일	
8.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 합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9. 인테리어 공사	-규정대로 공사 시공 (가구류, 간판류, 승압기 등은 가맹점 사업자가 실비용 부담)	10~15일	약 1,680만원 (3.3㎡당 48) (점포별 상이할 수 있음) 책상 (200~280만원)
10. 인허가 완료	-학원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완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1~10일	
11. 교육 실시	-예비교육 실시	14일	
	-기본교육 실시	4일	

12. 가맹점 오픈	-가맹점 영업 개시		교재
------------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합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 소요시간 : 51~71일

1) 계약전 기간 (상담 ~ 가맹계약시까지) : 16~18일

2) 계약후 기간 (가맹계약 ~ 영업개시까지) : 35~53일]

점포의 상황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정이나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기간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특약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본 계약 시 점포가 없어 이후에 점포를 임대한 경우는 실제 점포의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점포를 개업하여야 합니다. 개업일자의 준수는 해당 가맹사업의 시스템 및 안정적인 운영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반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금 예치기관이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제도를 2008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당사의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 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잉글리쉬무무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비용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본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본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비용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 행사 지원	가맹점 오픈시 교재, 자재(답안지) 물품 지원	가맹점 사업자에게 동일 적용	가맹점을 개설할 때	100~300만 원 상당의 물품	
판촉장려금	해당 없음				
판촉지원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교육팀 (031-699-9630)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교육팀 (031-699-963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잉글리쉬무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 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신한은행	은행방침에 따라	신용(담보) 대출	가맹희망자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담보) 제공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해당지역 신한은행 지점으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잉글리쉬무무]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자금지원	가맹점 오픈시 조기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	신규 가맹시	오픈일로부터 1년간	콘텐츠 비용 1건당 20,000원 지원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6개월 평균 콘텐츠 매출 10건 미만	가맹계약기간	원장 교육, 홍보물 지원 등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 훈련 내용
제10조 (교육 및 훈련) ① '갑'이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을'의 가맹점의 관리자 또는 교사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갑'이 운영하는 교육은 개업전교육(예비교육, 기본교육), 정기교육(실무교육), 비정기교육(수시 교육, 전문가 과정, 원장 교육, 가맹지역본부 주관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예비교육	기본교육이전에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학습법이해	교재연구 실습	(기본교육입소 1 주전) 3일	필수 이수 (기본교육이수를 위한 필수교육)
기본교육	잉글리쉬무무의 교육 철학 핵심 프로그램 및 학습 시스템 교육 표준 학습법 및 학습관리기법 교육	강의 및 실습교육	계약체결 후	필수 이수 (가맹점사업자와 해당 가맹점 관리인 또는 교사)

현장 실무교육	기본교육 내용을 현장 실습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교육	소규모 집단강의 및 실습교육 (해당 총판점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	2 주	합의 이수
총판경영 교육	잉글리쉬무무의 교육 철학 교육정책변화 등 영업이슈교육 신간 프로그램, 시스템 교육	집단강의	(정기적 평균 3개월에 1회 실시) 1일 8시간	필수 이수
수시교육	신간교재 및 변화되는 교육정보제공	집단 강의	2시간	필수 이수
전문가과정	발음클리닉 지도사, 실용문법 지도사, 다독지도사 등 교사 심화 교육과정	집단강의 및 실습교육	4~8시간	합의 이수
학습관 실무교육	진단평가, 학습설계, 상담, 교사교육 등 학습관 운영실무 후속교육	집단강의	4~8시간	합의 이수
가맹지역 본부 주관 교육	가맹지역본부의 필요에 따라 편성 (프로그램, 시스템, 학습법 등)	집단강의 또는 실습교육	필요에 따라 편성	필수 이수

- 1) 예비교육(교재연구 실습) : 기본교육 입소 1주전에 당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당 총판점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는 기본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기본교육(강의 및 실습교육) : 가맹점사업자와 해당 가맹점 관리인 또는 교사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본사에서 준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가맹점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 3) 현장 실무교육(소규모 집단강의 및 실습교육) :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당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당 총판점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 4) 현장실무교육(집단강의) : 당사는 가맹점 중, 영업실적 또는 교육실적 등을 기준으로 교육이 필요한 가맹점을 선별하여 심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와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당사가 운영하는 MMS를 통하여 교육 실시 1주일 전에 통보합니다.
- 5) 수시교육(집단강의) : 당사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중요한 영업상 및 교육상 방침이 변경될 때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와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당사가 운영하는 MMS를 통하여 교육 실시 몇 주 전에 통보합니다.
- 6) 전문가과정(소규모 집단강의 및 실습교육) : 발음클리닉지도사, 실용문법지도사, 다

독지도사 등 당사는 특정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교육을 원하는 가맹점사업자나 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과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합니다.

7) 총판경영교육(집단강의) : 당사는, 총판점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총판경영교육을 정기적으로 (평균 3개월에 1회) 실시합니다. 당사의 총판경영교육은 보통 8시간 동안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진행되며 가맹점 관리방안 및 당사의 교육 및 영업 정책 등을 교육합니다.

8) 가맹지역본부 주관교육(집단강의 또는 실습교육) : 이외에도 각 지역사 또는 총판점 대표는 당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사정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예비교육	(기본교육입소 1 주전) 3일	가맹점 사업자 (1일기준 실비: 최대 12,500원)	매일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됨
기본교육	(계약체결 후) 1박2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됨	교육 시작은 오후 1시 / 퇴소 오후 4시
실무교육	2 주	가맹점 사업자 (1일기준 실비: 최대 12,500원)	매일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됨
총판경영교육	(정기적 평균 2개월에 1회 실시) 1박2일	가맹본부 부담	교육 시작은 오전 10시 / 퇴소 오후 6시
수시교육	2시간30분	가맹지역본부 부담	
전문가과정	(수시실시) 1박2일	가맹점 사업자 (실비, 최대 1인 100,000원)	교육 시작은 오후 1시 / 퇴소 오후 4시
원장교육	1박2일	가맹본부 부담	교육 시작은 오후 1시 / 퇴소 오후 4시
가맹지역본부 주관 교육	2시간	가맹점 사업자 (1일 기준 실비 최대 15,000원)	필수교육, 심화교육

[기본교육 : 가맹점 계약시 실계약자 1인에 한하여 교육비가 면제되며 가맹점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실계약자를 제외한 인원은 1인당 20만원 교육비가 추가되며 학습관 양수의 경우도 교육비 20만원 추가됨(가맹점 교사 교육비는 15만원임)]

[다만, 당사는 위 제시된 비용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교육비용을 책정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1. 해당 가맹계약의 체결 시 또는 갱신·연장 시에 예정되어 있던 교육의 교육비용이,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가맹계약의 체결 시 또는 갱신·연장 시에 예측한 비용에 비하여 2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2. 해당 가맹사업의 성공적인 영위를 위하여 정당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가맹계약의 체결 시 또는 갱신·연장 시에 예정되어 있지 않던 교육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3. 기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훈련의 주체

가맹점사업자와 그가 채용하는 교사는 기본교육(예비교육, 실무교육포함), 원장교육, 수시교육 및 해당 가맹지역본부에서 자체 실시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운영을 대리할 경우 대리운영자가 상기교육을 이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의 평가 및 재교육

가맹점사업자와 그가 채용하는 교사에 대한 각 교육이 종료된 경우, 가맹본부는 해당 교육의 수료자들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일정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의 필수 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공급의 중단이나 가맹계약이 해지, 계약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에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의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본사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1) 단계별 지원 축소에 해당하는 경우

단계	구분	적용 사유
1단계	적용 사유	①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 교육에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1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②가맹지역본부 주관의 정기 미팅에 월 1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천재지변,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의 사고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전에 교육 불참을 통보하여 당사 또는 총판점 대표의 승인을 득한 경우 3. 총판점 주관의 정기 미팅에 사전 불참을 통보하여 총판점 대표의 승인을 득한 경우
	지원 축소 내용	① 각종 설명회 개최 시 강사, 물품 지원 등의 모든 지원을 중단 ② 기타 당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판촉물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당사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중 시상대상에서 제외됨
2단계	적용 사유	① 교육에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2회이상 불참하는 경우 ②, 총판 주관의 정기 미팅에 월 2회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천재지변,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의 사고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전에 교육 불참을 통보하여 당사 또는 총판점 대표의 승인을 득한 경우 3. 총판점 주관의 정기 미팅에 사전 불참을 통보하여 총판점 대표의 승인을 득한 경우
	지원 축소 내용	① 당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물품의 제공의 중단 ② 각종 답안지, 평가지 등의 무상 제공품의 제공 중단
3단계	적용 사유	① 교육, 정기 미팅에 참석하지 않아 교육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2단계의 적용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지원 축소 내용	가맹점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는 매우 심각한 경우라고 보며, 계약 만기 시 계약 해지를 적극 권고할 것입니다.

2) 단계별 적용 기간

각 단계별 지원축소방안이 결정된 경우에는 최소 3개월간 지원축소가 유지됩니다.

3) 지원 축소 단계의 해제 방법

지원축소 실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해당 가맹점의 개선된 실적을 검토하여 해당 총판점 대표와 해당 지역사 대표, 그리고 당사가 합의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해당없음		
2	해당없음		
3	해당없음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해당없음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경영관리팀(031-699-962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moumou.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인테리어/설비 및 가맹점 운영시 필요 물품 상세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3> 잉글리쉬무무 가맹점 내부 평면도 (예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 수령 자필확인서

본인(가맹희망자)은 가맹본부(잉글리쉬무무)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확약한다.

([]안에는 자필로 해당 글자위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세요)

- ① 잉글리쉬무무가 가맹계약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를 제공한 일시 : 20 년 월 일
- ② 잉글리쉬무무가 가맹계약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를 제공한 장소 : _____
- ③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성 명 : _____
주 소 : _____
연락처 : _____
- ④ 잉글리쉬무무가 정보공개서를 작성(수정/등록)한 일자 : 년 월 일
- ⑤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 ⑥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의 제공 사실 : 아래사항 중 제공 방법을 선택하여 (○) 표시한다.
- () 직접 제공함
- () 전자우편으로 송부함(전자우편 주소 : _____)
- ⑦ 가맹계약자 _____는 잉글리쉬무무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를 제공받은 후 그 내용과 사용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 잉글리쉬무무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의 사용 용도를 잉글리쉬무무의 가맹사업계약에 관한 검토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잉글리쉬무무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를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상의 제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의 사용과 타인에게의 양도로 인하여 잉글리쉬무무의 가맹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을> 가맹희망자

성 명 : _____ (인/서명)

주민번호 : _____

주 소 : _____

<병> 가맹본부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D동 1115호(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 U1 센터)

상 호 : (주)잉글리쉬무무

대표이사 : 김 병 일

